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2021. 12. 7. 규정 제 3호

개정 2022. 8. 10. 규정 제28호

개정 2023. 7. 5. 규정 제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공단설립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 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과 기술 등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을 뜻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차 휴가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8. 10.>

제5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임·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임용, 승진, 전직,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일자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징계처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고 있는 직원은 감액된 봉급

을 계산하여 당해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취업규정에 정하는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직원에게는 초과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 결근자의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에 의해 제수당의 감액은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직 급여는 산업체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③ 이사장은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1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 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3. 7. 5.>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5.>

제12조(비상시의 지급)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직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월보수액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지급 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봉 급

제1절 기본금

제14조(봉급) ① 직원의 봉급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직 직원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봉급은 매년 균수와 성과계약에 의한다.

제15조(임금피크제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1년차 : 5%
2. 2년차 : 10%
3. 3년차 : 15%

단, 감액률은 전년도 보수기준으로 한다.

제16조(강임 시의 봉급보전) 강임 또는 직종 등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 및 직종 등이 변경된 봉급이 강임 또는 직종 등이 변경되기 전에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 또는 직종이 변경 되기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7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초임호봉 확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합산한다.
 ③ 신규직원 호봉책정 후 최저임금 위반될 경우 최저임금 저촉되지 않는 상위 호봉을 적용한다.

제18조(호봉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별표 2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력 합산의 경우 객관적 입증서류를 근거로 재산 정하되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자로 호봉을 재획정 발령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 제19조(호봉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이 승진할 때의 호봉획정은 승진되기 전 직급의 호봉을 승진된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직무대행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에 상응하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승급시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22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한 기간

제23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2절 성과급

제24조(이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5조(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6조(예산성과급)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장 수 당

제27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 연수에 따라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근무 연수라 함은 별표 2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연수를 말한다.

제28조(대우수당) ①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월봉급액의 6%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봉급과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이 차상위직 승진임용시의 봉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 지급한다.

- ②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보수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직원은 수당감액비율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29조(기술 등 자격수당)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기술 등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한 자와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부장이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차수당) 연차 휴가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2조(당직수당)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수당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특수업무수당)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급여금

제37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요율에 의거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

② 1년간의 퇴직급여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지후생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하되, 연차수당과 상여수당, 자체평가급 100%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으로 한다.

④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8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로부터 퇴직일까지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월 단위 이상은 월할,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3. 정원의 감축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하는 자와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는 1년 미만의 잔여 개월에 대하여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제39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임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② 임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직원에게는 적용치 아니한다.

제40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 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1조(명예퇴직수당) ① 공단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 기간은 공단 인사규정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공단 인사규정 제41조 제3항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43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연봉제는 연봉기준, 호봉제는 봉급기준으로 한다.

제43조(조기 퇴직수당) 인사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봉급의 6개 월분에 해당하는 조기퇴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43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연봉제는 연봉기준, 호봉제는 봉급기준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45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근무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 이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근무수당, 파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정한 정원 임용자격 기준의 직급과 경력에 의한다.

제46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 여비 등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47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10원 단위까지만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3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8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공포일에 해당하는 달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다른규정의 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임금지급일) 중 “5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부 칙 [제38호, 2023. 7. 5.]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4조 관련)

임원의 초임 연봉 기준표

(월지급액)

구 분	기 준 표
이 사 장	공무원4급 6~10호봉

직원의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공단	기 준 표				
	5급	6급	7급	8급	9급
3급	해당 호봉 상당				
4급		해당 호봉 상당			
5급			해당 호봉 상당		
6급				해당 호봉 상당	
7급					해당 호봉 상당

주) 본 보수표는 일반직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여 공무원보수표 변경 시 그에 따른다.

[별표 2] (제17조, 제18조, 제27조 관련)

경력 환산 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 근무경력 ◦ 공사, 공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근무 경력 ◦ 군경력(의무경찰, 전투경찰, 방위병, 공익요원 근무 기간 포함)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상장기업체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별정 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 연구기관, 기업체에서 공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 ◦ 기업체(상시종업원 50인이상) 과부장급이상 재직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 투자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기업체(상시종업원 50인이상)근무경력 	6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는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3] (제6조, 제10조 관련)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감봉 기간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지 급 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미 지급
감 액 할 금 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 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 액의 30퍼센트	수당 액의 50퍼센트	수당 액의 60퍼센트	수당 전액

[별표 4] (제27조 관련)

장기근속수당지급기준표

지급대상	월 지 급 액	비 고
정규직	20년이상 : 10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년수 20년이상 25년미만은 월 10,000원 근무년수 25년이상은 월 3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별표 5] (제29조 ~ 제33조, 제36조 관련) [개정 2022.8.10.]

수당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율 및 지급금액	비 고
기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능장 : 월 100,000원 • 기사 : 월 30,000원 • 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기능사 : 월 25,000원 • 운전원 : 월 40,000원 • 영양사 : 월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에 대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0/100)/209×시간	• 근로기준법 적용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0/100)/209×시간	"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150/100)/209×시간	"
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
자녀학비 보조수당	[별표 8]	
당직수당	일직, 숙직1회 : 50,000원 휴무일 전날 숙직의 경우 : 6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사업장 (군민체육관) : 20,000원
위험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종(위험물취급) : 월 50,000원 • 을종(전기, 보일러취급) : 월 40,000원 • 하수 및 기축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월 30,000원 • 소각시설 근무자 : 월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숙화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근무자 제외
특수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담당수당 : 예산담당자 • 감사담당수당 : 감사담당자 • 결산담당수당 : 결산담당자 • 노무담당수당 : 노무담당자 • 경영평가담당수당 : 경영평가담당자 • 계약담당수당 : 계약담당자 • 보상담당수당 : 보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수당 : 부숙화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월 1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 : 월 80,000원 • 해설사 : 월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로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업무 수행 직원
파견업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파견자 월 300,000원	
관리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 : 월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p>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p> <p>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p>
임금보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협상 금액 	<p>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p> <p>나. 고용승계 시 연봉 협상한 직원에 한함. (2년미만 근무자 및 실험실 근무자 제외)</p> <p>다. 연봉제 전환 등 사유 발생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급</p>
위원회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석수당 : 1인 1회 100,000원 	<p>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공단소속 직원 지급 제외)</p> <p>나. 2시간 이상 참석시 30,000원 추가지급 가능</p>

[별표 6] (제37조 관련)

퇴직급여지급율표

기준	지급율
근속년수 1년 이상	· 평균임금액×30일×근속일수/365일

[별표 7] (제41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정년잔여기준	산정기준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50%×잔여월수 ①
5년 초과 ~ 10년 이내	①+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25%×(잔여월수-60월)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

[별표 8] (제35조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학 교	지 급 액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 교육시설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 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